

제102회 정기이사회 의사록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일 시	2021. 12. 28.(화)	기록자	김현대
장 소	서울시복지재단 10층 회의실		
재적이사	10명 (정하균, 김상철, 정상택, 박종빈, 신용규, 문유진, 장재구, 안철홍, 김주일, 백은령)		
출석이사	8명 (정하균, 김상철, 하영태 , 정영석 , 신용규, 장재구, 안철홍, 김주일)		
참여자	7명 (재단-김현대, 나도철, 손대규, 이규진, 김예린, 서울시-정재훈, 박기범)		

의결사항

의안번호	제 목	의결내용	소관부서
401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40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403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조건부 의결 (예산 연동)	경영기획실
404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조건부 의결 (예산 연동)	경영기획실
405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수정의결	경영기획실
406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407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408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409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410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411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문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412	명시이월의 건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413	예산이용의 건	원안의결	경영기획실

회의내용 : 별 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서명함.

2021년 12월 28일

이 사 장 정 하 균

이 사 장 재 구

이 사 김 상 철 (인)

이 사 안 철 홍

이 사 정 상 택

이 사 김 주 일

이 사 박 종 빈

이 사 백 은 령 (인)

이 사 신 용 규 (인)

감 사 하 영 태 (인)

이 사 문 유 진 (인)

감 사 장 윤 미

제102회 정기이사회 회의내용

1. 회의개요

회 의 명: 제102회 정기이사회

기 관 명: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일시 및 장소: 2021. 12. 28.(화) 16:00, 재단 10층 회의실

현황

- 재적이사: 10명(정하균, 김상철, 정상택, 곽종빈, 신용규, 장재구, 문유진, 안철홍, 김주일, 백은령)

- 참여이사: 8명(정하균, 김상철, 代하영태(정상택), 代정동석(곽종빈), 신용규, 장재구, 안철홍, 김주일)

- 재적감사: 2명(하영태, 장운미)

- 참여감사: 1명(장운미)

- 배 석 자 : 2명(서울시-박기범, 정재훈), 4명(재단-김현대, 손대규, 이규진, 나도철)

안건목록

의안번호	건 명	의결내용
401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원안의결
40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의결
403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조건부의결
404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조건부의결
405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수정의결
406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407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408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409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410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411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문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의결
412	명시이월의 건	원안의결
413	예산이용의 건	원안의결

기록부서 : 경영기획실

2. 논의결과

① 의안번호 제401호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안건 주요내용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27,727,916천원, 총 78개 세부사업 / 전년대비 305,401천원 증, 1.1% 증)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함.
- 현재 시의회 예산심의 중으로 최종 예산 의결에 따라 내년 초 추경 진행 예정임.
- 2022년 재단 연구과제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고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예산 최종 의결에 따라 연구과제도 추후 확정 예정임.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② 의안번호 제40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건 주요내용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36,014,345천원, 총 7개 세부사업 / 전년대비 13,088,134천원 증, 57.1% 증)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함.
- 현재 시의회 예산심의 중으로 최종 예산 의결에 따라 내년 초 추경 진행 예정임.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③ 의안번호 제403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안건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정원표 변경)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에 대해 설명함.
- 아직 22년 예산에 대한 시의회 본회의 확정 전으로, 정원 변경과 관련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조건부 승인이 필요함.

논의결론

- 조건부 의결함(8명 찬성)

④ 의안번호 제404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안건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정원표 변경, 정관 허가 전 정원 조정 관련 준비 시행)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 설명함.
- 아직 22년 예산에 대한 시의회 본회의 확정 전으로, 정원 변경과 관련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조건부 승인이 필요함.

논의결론

- 조건부 의결함(8명 찬성)

⑤ 의안번호 제405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안건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채용 결격사유 조정, 승진제한 사유 및 가산기간 조정)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 안 제10조 채용 결격사유 중 ‘채용 신체검사 부적격’ 내용을 삭제할 경우 지원자에 대한 스크리닝이 어려우므로, 직원 채용 시 재단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안 제26조 개정안 내용 중 ‘성희롱 및 성매매’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위하여 자구를 ‘성희롱, 성매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단 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정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논의결론

- ‘성희롱 및 성매매’를 ‘성희롱, 성매매’로 수정 의결함(8명 찬성)

⑥ 의안번호 제406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안건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청원휴가 중 휴가일수 조정)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⑦ 의안번호 제407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안건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직위해제자 보수감액 기준 조정, 직책(직급)보조수당 지급범위 명확화)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 직책(직급)수당 지급 범위를 개정하였으나, 속인적 수당(직책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직급수당)이 여전히 혼용되어 있으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향후 규정 정비가 필요함.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⑧ 의안번호 제408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안건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 규정안(특별공로금 삭제)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⑨ 의안번호 제409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안건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용어 수정, 단어 명확화, 안전보건관리 의무 강조, 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사항 등)을 안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므로 재단에서도 안전사고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함.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⑩ **의안번호 제410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안건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용어 개정)을 안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회계규정 일부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⑪ **의안번호 제411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문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안건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문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용어 개정)을 안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문서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⑫ 의안번호 제412호 <명시이월의 건>

안건 주요내용

- 명시이월의 건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명시이월의 건에 대해 설명함.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⑬ 의안번호 제413호 <예산이용의 건>

안건 주요내용

- 예산이용의 건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예산이용의 건에 대해 설명함.

논의결론

- 원안 의결함(8명 찬성). 끝.